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34
----------	-------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장종태 · 복기왕 · 김남근

모경중 · 정일영 · 윤종균

문정복 · 안태준 · 이용선

염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특정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또는 5년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 기준을 두고 있음.

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여객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처분 및 취소된 경우 여객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대상자의 주소변경 또는 행정기관

의 착오 등으로 여객운송 종사자격 취소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객운송 종사자격의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제한 기준 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객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된 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여객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 후에도 여객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87조제2항 신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시험일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을 기준으로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거나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없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절차”를 “절차와 여객운송 종사자격 효력 상실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여객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자의 시험 응시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 및 교육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 ----- ----- ----- ----- ----- ----. 다만, 제3호에 따른 시험 일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을 기준으로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거나 제4호에 따 른 교육을 이수할 수 없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 을 취득할 수 없다.	③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다. (생략)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나. (생략)

④·⑤ (생략)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다.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나.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여객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절차와 여객운송 종사자격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u>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u>---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